

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사업  
**2026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 
지원사업 안내(추가공모)**

# 목 차

1

사업 안내

2

지원 유형별 안내

창단지원 유형 / 역량강화지원 유형

3

사업 지원시 유의사항

4

자주 묻는 질문

1

#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 안내

##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은

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 
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 
고용주체를 대상으로

역량강화비, 행사지원비, 초반 운영비  
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장애  
예술인

문화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중  
장애인등록증을 받았거나 상이등급 중  
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

고용  
주체

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 
수 있는 공공 및 민간 기업·기관, 지자체,  
교육청 등

\* 모든 고용주체가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
참여가 가능한 고용주체의 유형은 공고문의  
'지원신청자격'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

##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 안내

2026년에는 2개의 지원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.

### 창단지원 유형

최대 2년간 지원

장애인예술단을 신규 창단하거나  
장애예술인을 신규 채용하는  
고용주체의 예술단 초반 운영을 지원

### 역량강화 지원 유형

단년지원

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 
직업 장애인예술단의  
예술단원 역량강화를 지원

모든 지원유형은 최소 4인 이상의 장애예술인이 참여해야 합니다.

2

## 사업유형별 안내 : 창단지원 유형

창단지원 유형은 아래의 기간 내 4인 이상의 신규 장애예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 예정인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.

**\* 고용 인정 기간 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6월 30일**

- 창단지원 유형은 최소 채용인원 수에 따라 2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.

**일반  
유형**

- 4인 이상의 장애예술인 고용
- 연간 지원금 40~60백만원

**표준  
사업장  
유형**

- 10인 이상의 장애예술인 고용
- 장애인 표준사업장\*
- 연간 지원금 60~80백만원

\* 금년도 내 표준사업장지원제도를 통해  
표준사업장 인증을 완료할 예정인 사업자 포함

## 2

## 사업유형별 안내 : 창단지원 유형

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# 단원 역량강화 지원

- 장애예술단원의 예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술 직무 교육과 직업 소양을 위한 교육 훈련비(강사비)를 지원합니다.

### 예술단 행사 지원

- 장애인예술단의 전시, 공연을 위한 운영비와 부대비용을 지원합니다.  
\* 지원금을 사용하여 제작한 행사 관련 제작물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을 통해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명기해야 합니다.

## 2

## 사업유형별 안내 : 창단지원 유형

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 예술단 운영 지원

- 장애인예술단 초반 운영에 필요한 임차(공간, 사무집기, 이동차량 등) 및 소모품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.
  - \* 자산성 물품(전자기기, 가구 등 사무집기, 50만원 이상 단가의 소모품 등) 구매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- \* 임차시 예술단의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사무집기의 경우 임차가 불가합니다.

## 전문 운영인력 지원

- 장애인예술단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
  - \* 업무범위 : 장애인예술단 경영 및 활동 기획, 단원 관리 등 예술단 운영 전반 수행(사업 행정 포함)
  - \* 대표, 임원, 이미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 2

## 사업유형별 안내 : 창단지원 유형

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 예술단 홍보 지원

- 예술단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과 TV·신문·잡지·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,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  - \* 지원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의 경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 내용이 표기되어야 합니다.

2

## 사업유형별 안내 : 역량강화지원 유형

역량강화지원 유형은 4인 이상 규모의 직업 장애인예술단을 2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.

**\* 2024년 4월 이전 장애인예술단을 창단(예술단원 채용) 한 경우**

- 또한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역량  
강화  
계획

- 단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
및 예산 사용 계획 보유

**\* 행사지원비만 단독으로 신청 불가**

전용  
공간  
보유

- 역량강화를 진행하기 위한 전용  
공간 마련 필수

**\* 단원의 자택, 학원 등 교습소, 1회성  
대여 시설, 온라인 교육은 지원금  
사용 불가**

## 2

## 사업유형별 안내 : 역량강화지원 유형

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### 단원 역량강화 지원

- 장애예술단원의 예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술직무 교육과 직업 소양을 위한 교육 훈련비(강사비)를 지원합니다.

### 예술단 행사 지원

- 장애인예술단의 전시, 공연을 위한 운영비와 부대비용을 지원합니다.
  - \* 지원금을 사용하여 제작한 행사 관련 제작물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을 통해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명기해야 합니다.

\* 운영비는 사업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운영비(회계검증 수수료, 예술인고용보험료 등)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.

## 3

## 사업 지원시 유의사항

- 본 지원사업은 장애예술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.  
예술단원의 급여는 사업을 참여하는 고용주체가 지급해야 합니다.
- 본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단원을 최소 1년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.  
이를 의무고용기간이라 하며, 창단지원 유형에 선정된 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의무고용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.
  - \* 사후관리기간동안 단원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- \* 연속지원에 선정되어 2년간 지원을 받게 될 경우 단원의 의무고용기간도 1년 연장됩니다.

## 3

## 사업 지원시 유의사항

- 사업 선정 이후, 계획서에 제출한 예술단원의 규모가 사업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단원 퇴사 등의 사유로 규모가 변동 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신규 단원을 충원해야 합니다.
- 신규 단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규모 변동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삭감 되거나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- \* 사업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지원금의 전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.

## 3

## 사업 지원시 유의사항

- 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시스템인 **e나라도움**을 사용하여 지원금의 교부, 사용, 정산이 진행됩니다.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 지원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**보조금 전용통장**이 필요합니다. 전용통장은 신규 발급하거나, 잔액이 0원인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들수 있습니다.
-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**지자체**와 **교육청**의 경우 지원신청 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## 4

## 자주 묻는 질문

**창단 지원 유형에 지원하고 싶습니다.  
전담인력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단원의 급여로 편성할 수 있나요?**

**예술단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내부 직원으로 지정하고  
지원금으로 급여를 줄 수 있나요?**

- 전담인력비는 사업기간 동안 장애인예술단과 본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입니다. 예술 단원과 기존 직원의 급여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.

## 4

## 자주 묻는 질문

### 지원금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전담인력은 몇 명이나 가능한가요?

-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수는 원칙적으로 1명이나, 관리해야 하는 장애예술단원이 많아 부득이 1명 이상의 전담인력 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 하에 추가인원에 대한 비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.
- 단, 전체 사업비의 50%를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.

## 4

## 자주 묻는 질문

### 100인 미만의 민간 기업입니다.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?

- 민간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100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.
-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인 미만의 민간 기업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
## 4

## 자주 묻는 질문

## 우리 기업(관)이 지원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

- 공고문에 제시한 지원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격 조건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.
- 사업담당자의 연락처는 02-760-9721~2번입니다.
- 이메일 문의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[artjobssupport@kdac.or.kr](mailto:artjobssupport@kdac.or.kr)로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,

## 4

## 자주 묻는 질문

25년 3월에 장애인예술단을 신규 창단한 기업입니다.  
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?

- 26년도 신규 사업 참여 조건의 기준은 25년 7월부터 26년 6월 사이에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하거나 신규 단원을 추가 채용하는 기업(관)을 지원하는 **창단지원 유형**과, 2년 이상 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한 기업(관)을 지원하는 **역량강화지원 유형**이 있습니다.
- 25년 7월~26년 6월에 4인 이상의 신규 단원을 추가 채용하실 경우에는 **창단지원 유형**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.

## 4

## 자주 묻는 질문

신규단원을 추가 채용하여 창단 지원 유형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.  
신규 단원이 아닌 기존 단원도 역량강화비를 사용하여 교육이 가능한가요?

- 창단지원 유형의 역량강화비는 신규채용단원의 수에 따라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예산 한도내에서 기존 단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신규 단원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 단원만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기존 단원의 교육 지원만 희망하실 경우 역량강화지원 유형으로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(2년 이상 장애인예술단 운영시)

## 4

## 자주 묻는 질문

### 지원금으로 예술단 운영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무기기 임차나 사무용품 구매가 가능한가요?

-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운영비는 '장애인예술단' 운영을 위한 기기의 임차비와 소모품 구매에 한해 편성이 가능합니다. 일반적인 부서 운영비는 편성 불가합니다.

\* 편성 가능 예시 : 단원 악보 출력을 위한 복사용지 구매, 예술단 이동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 (빔프로젝터) 임차 등

## 4

## 자주 묻는 질문

**예술단체(혹은 비영리기관)입니다. 사업기간동안 장애인 단원을 단체에서 고용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?**

-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지원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혹은 기업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, 사업기간동안이 아닌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.

\* 민간 비영리기관(단체)의 경우 민간기업 기준에 준하여 자격조건 부여

## 4

## 자주 묻는 질문

**법인 기업입니다. 본점에서만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?  
본점에서 채용한 예술단원을 추후 지사로 발령할 수 있나요?**

- 사업 참여는 본사로만 참여가 가능하며, 추후 예술 단원의 발령은 기업 내규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.
- 단, 사업 및 예술단원의 관리는 본사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발령으로 인해 단원의 업무가 변경되거나 근로조건이(근무시간, 급여, 근무장소) 단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.

\* 단원의 업무 변경과 근로조건이(근무시간, 급여, 근무장소) 단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사업 선정 취소 사유입니다.

## 4

## 자주 묻는 질문

계열사(혹은 자회사)가 지난 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지원받았습니다.  
신규 참여가 불가할까요?

- 법인등록번호가 다를 경우(독립법인) 참여가 가능합니다.
- 단, 독립법인이라도 기존 지원을 받은 계열사(자회사)와 **경영상 일체**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.

\* 경영상 일체로 판단하는 경우 :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하고 실질적 경영 주체도 동일할 경우,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시 기존 참여 기업과 합산되는 경우(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)

## 4

## 자주 묻는 질문

**재정지원 일자리사업\*을 하고 있습니다.  
장애예술단원의 급여를 해당 사업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 
창단지원 유형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할까요?**

\* 정부·지자체 등 공공 재원으로 특정 대상(노인·장애인·저소득층·청년 등)의 한시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 : 장애인(복지 특화)일자리 사업,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, 문화예술 연수단원 지원사업, 전문인력 지원사업(박물관, 미술관) 등

- 재정지원 일자리로 채용한 단원 외에 별개의 단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.
- 재정지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예술인은 사업 참여 대상인 신규채용 장애예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사업

## 2026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 안내



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

- 지원 문의 : 02-760-9721~2 / [artjobsupport@kdac.or.kr](mailto:artjobsupport@kdac.or.kr)
- 문의 가능 시간 : 월~금, 9:00~17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